

의안번호	2214327
의 퇴 인	이양수의원
회 답 일	2025.12.2.
추계번호	25D6210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8개 보훈관계법 개정안¹⁾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에 공공의료기관을 지정하여 보훈병원에 준하여 진료지원을 하는 경우, 추가 재정소요는 2027년 51억 9,200만원, 2031년 64억 1,0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89억 2,300만원(연평균 57억 8,5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준보훈병원 진료 (안 제7조)	5,192	5,472	5,768	6,081	6,410	28,923	5,78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2조(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)	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의료지원기관에 공공의료기관을 포함	의무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42조(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)	○	—

1) 8개 보훈관계법 개정안

-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양수의원, 제2214316호)
-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양수의원, 제2214320호)
-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양수의원, 제2214321호)
-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양수의원, 제2214322호)
-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양수의원, 제2214324호)
-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양수의원, 제2214325호)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양수의원, 제2214326호)
-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양수의원, 제2214327호)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에서 8개 보훈관계법 개정안에 따른 진료 또는 의료 지원은 개별 법률에 따른 보훈대상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
- 본 추계에서 개정안에 따라 보훈병원에 준하여 진료지원을 하는 공공의료 기관(이하 “준보훈병원”이라 함)은 「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국립대학 병원 또는 지방의료원 중 강원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에 각각 1개를 지정하는 것으로 가정함
- 본 추계에서 개정안에 따른 준보훈병원 진료지원 대상은 만성질환자이며, 그 인원은 국가보훈부가 2024년 2월 완료한 「준 보훈병원 지정 및 의료이용 예측모형 개발」 연구용역의 예측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함
 - 추계의 대상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준보훈병원으로 이동하는 진료 대상 인원임
 - 다만, 준보훈병원 이동에 따른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인원 감소분 또는 신규 유입분, 준보훈병원 신규 유입분은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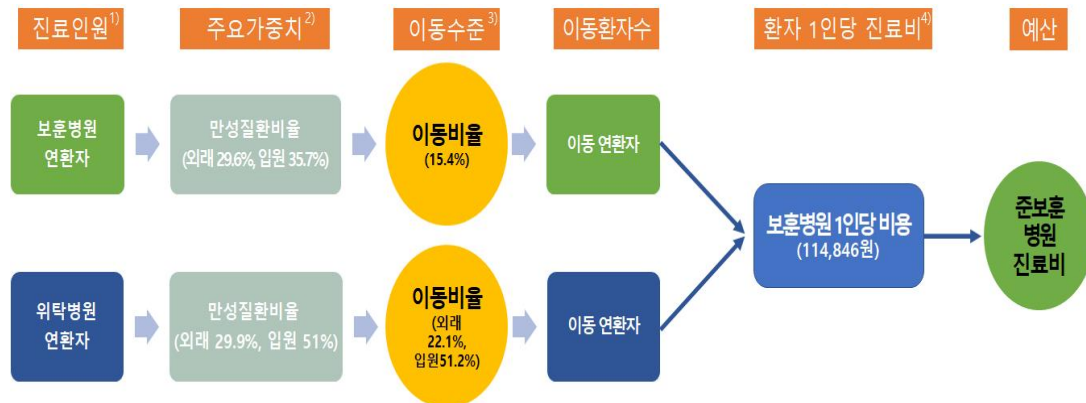
[표 2] 준보훈병원 진료지원 대상 인원 추정: 2027~2031년

(단위: 명)

구분		2027	2028	2029	2030	2031
보훈병원 → 준보훈병원	강원	6,909	6,831	6,754	6,677	6,602
	제주	2,824	2,792	2,761	2,729	2,699
	소계	9,733	9,623	9,515	9,406	9,301
위탁병원 → 준보훈병원	강원	20696	20841	20987	21134	21282
	제주	8461	8519	8579	8640	8700
	소계	29,157	29,360	29,566	29,774	29,982
합계		38,890	38,983	39,081	39,179	39,283

주: 국가보훈부 「준 보훈병원 지정 및 의료이용 예측모형」에 따른 인원임
 자료: 국가보훈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[그림 1] 준보훈병원 이동 인원 추계 산식(자료: 국가보훈부)



- 1) '24년 진료연인원 기준, 지역별 보훈병원 환자 수(인구수) 비중을 적용(강원3.87%, 제주1.58%) 후 최근 5개년('20~'24년)간 연평균 증감률 반영(보훈병원 △1.13%, 위탁병원 0.70%)
- 2) 보훈병원 만성질환비율=외래 29.6%, 입원 35.7%(보훈의료체계 연환자 기준, 2022)
위탁병원 만성질환비율=위탁병원 이용자 중 외래 29.0%, 입원 51.0%(위탁병원 진료제도 적정운영방안, 2019)
- 3) 보훈병원 이동비율=복지부 '약국부담금차등제' 시행에 따른 고혈압&당뇨병환자의 이동비율 적용(복지부, 2016)
위탁병원 이동비율= 위탁병원 추가지정 시 타지역에서 입원진료로 발생되는 비중 51.2%, 외래진료로 발생되는 비중 22.1%(위탁병원 진료제도 적정운영방안, 2019)
- 4) '24년 보훈병원 진료단가

- 본 추계에서 진료비 지원단가는 보훈병원의 단가와 동일하다고 가정하며, 2024년 기준 보훈병원 진료비 지원단가(114,846원)에 연평균 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함

[표 3] 최근 5년간 보훈병원 진료비 단가: 2020~2024년

						(단위: 원)
구분	2020	2021	2022	2023	2024	증감율
보훈병원	93,958	98,349	102,425	109,124	114,846	5.15%

자료: 국가보훈부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준보훈병원 진료비 단가 추정: 2027~2031년

						(단위: 원)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증감율
준보훈병원	133,507	140,378	147,602	155,199	163,187	5.15%

자료: 국가보훈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-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,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준보훈병원 진료대상 인원에 진료비 단가를 곱하여 추계함
- 추계결과, 8개 보훈관계법 개정안에 따라 강원과 제주에 공공의료기관을 지정하여 보훈병원에 준하여 진료지원을 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51억 9,200만원, 2031년 64억 1,0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89억 2,3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준보훈병원 진료비 지원의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명, 백만원)

구분		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진료 대상 인원	보훈병원 → 준보훈병원	강원	6,909	6,831	6,754	6,677	6,602	—
		제주	2,824	2,792	2,761	2,729	2,699	—
	소계		9,733	9,623	9,515	9,406	9,301	47,578
	위탁병원 → 준보훈병원	강원	20696	20841	20987	21134	21282	—
		제주	8461	8519	8579	8640	8700	—
	소계		29,157	29,360	29,566	29,774	29,982	147,839
	합계		38,890	38,983	39,081	39,180	39,283	195,417
진료비 지원 단가(단위: 원)			133,507	140,378	147,602	155,199	163,187	—
추가재정소요			5,192	5,472	5,768	6,081	6,410	28,923

주: 본 추계는 국가보훈부가 2024년 2월 완료한 「준 보훈병원 지정 및 의료이용 예측모형 개발」 연구용역의 예측모형과 보훈병원 진료비 단가 등을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, 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면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와 달라질 수 있음
 자료: 국가보훈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국가보훈부가 2024년 2월 완료한 「준 보훈병원 지정 및 의료이용 예측모형 개발」 연구용역의 예측모형과 보훈병원 진료비 단가 등을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, 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면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와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장삼열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삼열	02-6788-4831	jsy@na.go.kr